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55回平昌郡議會

第 2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1998年 4月 8日(水) 11時35分

議事日程 (第2次 本會議)

1. 聲明書採擇의件
2. 金容郁平昌郡守의不信任議決의件
3. 1998年度上半期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結果報告
4. 平昌郡事務의邑·面委任條例중改正條例案
5. 平昌郡地方青少年委員會運營條例案
6. 平昌郡青少年指導委員의委囑에關한條例案
7. 平昌郡葬禮式場設置및運營條例案
8. 平昌郡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중改正條例案
9. 第55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附議된案件

1. 報告事項 _____ 2 面
2. 聲明書採擇의件(劉燉文議員外7人發議) _____ 2 面
3. 金容郁平昌郡守의不信任議決의件(劉燉文議員外7人 發議) _____ 6 面

- 4. 1998年度上半期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結果報告(金斗經議員外7人發議)- 7 面
- 5. 平昌郡事務의 邑·面委任條例증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9 面
- 6. 平昌郡地方青少年委員會運營條例案(平昌郡守提出)————— 10 面
- 7. 平昌郡青少年指導委員의 委屬에 關한 條例案(平昌郡守提出)————— 10 面
- 8. 平昌郡葬禮式場設置 및 運營條例案(平昌郡守提出)————— 11 面
- 9. 平昌郡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증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14 面
- 10. 第55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 件(議長提議)————— 16 面

(11時35分 開議)

○ 議長 李相燾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사간 바쁜일정에도 불구하고 회기중 예정된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수행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

(11時36分)

○ 事務課長 李京植 :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議長 李相燾 :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聲明書採擇의 件

(劉燾文議員外6人發議)

(11時38分)

○ 議長 李相燾 :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성명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돈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燾文 議員 : 유돈문 의원입니다. 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

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동안 평창군의회는 군민의 기대와 성원으로 보다 나은 완전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실한 정착을 위하여 노력 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군민에게 다가서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대의회를 마무리 하면서 저희 평창군의회 의원들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충정 어린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군민 여러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는 집행부의 책임자이자 주민의 머슴으로서 군민의 살림살이를 알차게 계획하고 집행하여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의회는 군민을 대신하는 주인으로서 군수가 집행하는 행정전반에 대해서 감시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잘한 것은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질책과 시정으로 바르게 잡아가는

견제와 협력의 역할이 가장 큰 임무일 것입니다.

파행적인 군정수행을 일삼는 김용욱 평창군수에 대해서 행정정힘의 무지 탓으로 판단하고 2년동안 협력하여 나아질 것을 기대했지만, 가는 곳 마다 문제점이 돌출되고 질차나 규정을 무시한 행정행태는 행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등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의회가 묵인하고 방관만 한다면 의회 또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사적인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며 여러차례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하여 개선과 시정을 요구 하였지만,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의회에서는 지난 제53회 정기회를 통하여 평창군수 사퇴권고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못된 군정을 바로잡고 뉘우치기는 커녕, 군민들을 선동하고 왜곡된 해명과 함께 고의적으로 의회 참석을 기피하고 외면하는 등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작태가 극에

달하고 있으며, 독선적인 군정운영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정도이며 다툼과 시비, 부도덕한 언행 등으로 군수의 품위가 땅에 떨어져 있음은 물론 사기죄로 구속되는 등 군민 모두에게 치욕의 굴레를 지워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국가의 대사인 대통령 선거가 국민 모두의 관심속에 치뤄지고 있을때 김용욱 평창군수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주 모 골프장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막중한 선거업무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많은 공직자와 관련자들이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때, 평소 군민의 상머슴이라고 자처하는 군수가 군민들의 관심을 팽개치고 골프를 즐기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태인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도 관내외 골프장 출입을 일삼고 있으며 휴일이면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관외 지역으로 사적인 출타가 잦아지고 있음은 서민이나 농민의 아픔을 모르는 군민 배신 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

으며, 각종 인·허가 사항도 관련 부서의 의견은 무시하고 군수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현행법과 현실을 무시한 한심한 행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잘 관리하여 부동산 가치를 증식시켜 군의 재산을 늘려야 할 군수가 군유림 24ha(72,000평)가 무단 벌채되어 임목의 1/2이 반출된 후에 적발 입건 하므로 전국 최대의 무단 벌채 사건으로 기록된 것은 군민 모두의 수치가 아닐 수 없으며 김용욱 군수는 군재산 관리와 감시 감독의 무지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군수의 선심성 사전공약을 믿고 강행하다가 국유림 무단훼손으로 주민들이 고발 입건되자 이를 정당화 하기 위해 급히 서둘러 측량과 설계를 하는 촌극을 벌이는 등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채 주민과의 직거래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오지면 개발사업의 저온저장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설계용역을 줌으로써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4억 3,000만원의 막대한 예

산을 투자한 시설을 3년씩이나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으며, 군에서 시공하여 주민에게 위탁 관리 시켰어야 하나 시설공사 모두를 주민에게 위탁 시공하게 함으로 인한 부실공사 재시공 경비 1억 5,000만원의 군비를 더 투자해야 되는 등 행정부재요, 무지의 소치가 아니겠습니까?

도암면 소재 군수의 개인사택앞 도로포장시 우수관로까지 매설 했는가 하면, 군수 개인 사유지(6000평)에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용산1리(솔봉골) 농촌 마을길포장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군수포괄사업비 5,130만원을 투자하여 640m를 확포장한 사례는 군민을 더욱 분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의 작은 숙원사업들을 해소 하기 위한 군수 포괄사업비가 이렇게 쓰여 진다면 어떻게 군수에게 행정부의 장으로 인정할 수 있겠으며 군 살림살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군수관사를 2억 5,0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통나무집을 짓겠다고 계획

을 입안했던 김용욱 군수는 진정 군민의 아픔을 얼마나 어루만져 주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선심성, 특혜성 공약을 남발하고 다니는 군수의 허울썩은 모습에 군민 여러분은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김용욱 군수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은 칼보다 더 무서운 것으로 절대로 남용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덕이 겸비된 사람이 아니면 권력을 이용한 큰부작용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김용욱 군수에게 권력은 칼이나 창보다 더 무서운 흉기로 쓰여지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결과는 군민이 책임질 수 없는, 다시는 회복시킬 수 없는 엄청난 후유증으로 남을 것입니다.

평창군민 여러분! 지금 우리 평창군은 고칠 수 없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상처를 도려내는 아픔에 의회가 앞장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평창군민 여러분!

저희 평창군의회 의원들의 진심어린 충

정과 군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현명한 판단이 함께 해야만이 깊은 구렁텅이의 어두운 곳에서 우리 평창군을 건져낼 수 있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을 사랑하는 평창군의회 의원님들께 충정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진언 드립니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I.M.F 구제금융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난극복의 의지와 아울러 평창군 자치행정의 조속한 정착과 이탈한 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서 평창군수의 업무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군수에 대한 신임을 더 할 수 없기에 평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김용욱 군수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만장일치로 의결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창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參 照 >

. 聲明書採擇案

(부록에 실음)

○ 議長 李相燾 : 유돈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명서채택의건은 사전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안 설명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金容郁平昌郡守의不信任議決의件

(劉燾文議員外6人 發議)

(11時50分)

○ 議長 李相燾 :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김용욱평창군수의불신임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성명서 채택이 되었고, 군정 파행 운영과 의회 부정 등의 책임을 들어 불신임 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미 의원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옥평창군수의불신임의결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年度上半期郡政主要事業場現地
確認結果報告(金斗經議員外7人 發議)
(11時51分)

○ 議長 李相薰 :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1998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 확인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김두경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斗經 議員 : 김두경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신 이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군정업무속에서도 현지사업장 안내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면서, '98 상반기 군정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활동은 지난 3월 30일 제5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계획에 의거 총 11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현지확인 일정은 3월 31일 미탄, 대화면을 시작으로하여 4월 1일 용평, 진부, 도암면과 4월 2일 인천, 4월 3일, 6일 서면확인을 끝으로 계획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확인결과 주민숙원사업을 사전에 예산확보와 회계규정 등 체계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한채 사업비 지원 약속만으로 마을에서 선시공토록 방치하여 사업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집행부의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민의 재산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재산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나, 관리소홀로 막대한 면적의 공유림이 무단 벌채되어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개간대상 부적지로 판단되어 불허 처분된 개간허가 민원이 현지여건 변동 없이 재신청시 허가처리된 사례는 민원 업무의 신뢰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더욱이 허가지역은 군비가 투자된 슬릿혹과리 방제지역으로 임목도가 높았으며, 국도변의 가시권내에 있어 미관저해 요소가 있었음에도 허가처리하여 특정인에 대한 행정지원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위탁관리사업에 있어서도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도 행정기관에서 지속적인 관리 부족으로 활용조차 못하는 사례도 확인하였으며, 이는 사업시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귀책사유를 가려 책임변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농로포장 사업이 일부 주민에 국한된 곳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함에 따라, 특정 소수인의 농경지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여론화 되어 행정불신을 야기시킨 사례가 있어, 향후 사업대상지의 신중한 결정과 다수 주민이 고루 수혜를 보는 형평성 있는 사업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 작업단 구성운영에 있어서도 군사업의 직영을 이유로 비공식 작업단을 임의로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작업단 대표를 산림분야와 무관한 자로 선정함에 따라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행정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이 결여된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추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 활동에서 나타난 제반사항에 대하여 좀더 투명하고 공정한 해결대책을 강구 조치함으로써 행정의 신뢰회복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현지확인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조기에 보완되도록 함은 물론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參 照 >

· '98年度上半期郡政主要事業場現地確認結果報告書
(附錄에 실음)

.....
○ 議長 李相薰 : 김두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동료 의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된 '98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회의 현지

확인결과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함으로써 군정의 차질없는 추진을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98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에 대한 보고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平昌郡事務의邑·面委任條例중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11時57分)

○ 議長 李相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願奉仕室長 李永德 : 민원봉사실장이영덕입니다.

내무과장이 출장중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평창군에서 운용중인

위임사무 관련 조례가 상위 법령과 불일치, 타 자치단체와의 명칭이 상이, 조례 내용이 불합리한 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법규 운용의 원활을 도모하고 앞으로 단위사무 전산화 및 행정계층간 사무처리실태 총람 재발간시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사무 추가계획에 따라 평창군 사무를 등재키 위하여 사전에 정비하려는 것이며 별표중 위임사무명을 직제순위에 맞게 순위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제명을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서 평창군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고 별표중 신설되는 내용은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參 照 >

· 平昌郡事務의邑·而委任條例중改正條例案

(附錄에 실음)

○ 議長 李相燾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平昌郡地方靑少年委員會運營條例案

7. 平昌郡靑少年指導委員의委屬에關한條例案

8. 平昌郡葬禮式場設置및運營條例案

(이상 3件 平昌郡守提出)

(12時00分)

○ 議長 李相燾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福祉課長 朴靜子 : 복지과장 박정자입니다.

먼저, 평창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평창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평창군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평창군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

하여 평창군의 자문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관계법령에 의하고 강원도청소년준칙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 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 일선현장에서 청

소년 건전생활지도 및 유해환경 정화 등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지도활동을 위해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자격을 규정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임무를 규정하는데,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와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토록 규정합니다.

"라"번에 군수는 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번에 지도위원의 효율적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군·읍면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관계 법령에 의거 한 조례고, 강원도 청소년준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창군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장례식장은 평창읍 중부리에 소재를 두고, 장례식장에는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장례식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하되, 필요시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리직원을 둘 수가 있고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로 충당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인우보증서 첨부하여 시설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사용신청을 한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것은 없고 평창군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제9조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제9조 1항 사용 신청을 한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후납할 수가 있다.

2항이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납부후 장례식장 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사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개정을 했습니다.

원안은 "사용자가 형편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할때에는 환불을 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수정을 해서 "사용료를 납부

한 후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만 환불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參 照 >

- . 平昌郡地方靑少年委員會運營條例案
 - . 平昌郡靑少年指導委員의委屬에關한條例案
 - . 平昌郡葬禮式場設置및運營條例案
-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 議長 李相燾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 檢討報告
- (끝에 실음)

○ 議長 李相燾 :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康鎬 議員 : 우강호 의원입니다.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금 전에 복지과장께서 다시 수정한 안 대로 되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평창군 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은 평창군 자체가 지방조직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현실이니까, "지방"자를 삭제해서 사용 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 에서 저희 평창군 현실에 맞게 두 조례 가 한 조례로 만들어지는 그런 통합조례 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다음번 의회에 다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福祉課長 林靜子 : 어제 간담회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이것을 검토를 하고 두 법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議長 李相薰 : 질의 하실 의원 안계 시면은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지방청소년 위원회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평창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모두 평창군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므로, 사전 의원간 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개별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것 보다 두건의 조례안을 통합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창군장례식장 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平昌郡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 中 改正

條例案(平昌郡守提出)

(12時06分)

○ 議長 李相薰 :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商工課長 劉元鍾 : 상공과장 유원종입니다.

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심주차난 해소 및 에너지 절약과 과소비 억제 등 국가경제시책에 부흥하기 위하여 경형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800cc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 경감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參 照 >

. 平昌郡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증改正 條例案

(附錄에 실음)

○ 議長 李相薰 :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 參 照 >

. 檢討報告

(끝에 실음)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평창군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第55回平昌郡議會臨時會會議錄署名
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2時14分)

○議長 李相薰 :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제55회평창군의회의회회의록서명
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이수
현 의원, 김두경 의원을 제55회 평창군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에 의원 여러분이
중지를 모아 함께 검토했던 모든 사항
들이 우리 군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
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
져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5
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
회와 폐회를 선포합니다.

(12時14分 閉會)

○ 出席議員

議	長	李	相	薰	
副	議	長	金	鍾	永
議	員	李	慶	鎭	
議	員	劉	燉	文	
議	員	李	洙	現	
議	員	金	斗	經	
議	員	金	樂	雲	
議	員	禹	康	鎬	

○ 出席公務員

民願奉仕室長	李	永	德
福祉課長	朴	靜	子
商工課長	劉	元	鍾

○ 議會事務課

事務課長 李京植

議事係長 全完鐸

地方行政主事補 李錠均

【 議 席 】

○ 議席表 (10 면에 실음)

.....
【 보 고 사 항 】

○ 의안접수사항

○ 의원발의

. '98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

결과보고서

(김두경의원외7)

. 성명서채택및군수불신임의결안제출

(유돈문의의원외7)

○ 일반문서접수

○ 자연환경연구공원평창군유치불바라

는 건의서에 대한 회신

('98. 3. 26 - 환경부장관)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3. 9. 평창군수(내무과장)
- 나. 회부일자 : 1998. 3. 30.
- 다. 상정일자 : 1998. 4. 8 제55회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 안 이 유

- 가. 평창군에서 운용중인 위임사무관련조례가 상위 법령과 불일치
타 자치단체와의 명칭이 상이, 조례내용이 불합리한 점을 체계
적으로 정비하여 법규 운용의 원활을 도모하고
- 나. 앞으로 단위사무 전산화 및 「행정계층간 사무처리실태총람」
재발간시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사무 추가계획에 따라 평창군
사무를 등재키 위하여 사전에 정비하려는 것임.
- 다. 별표중 위임사무명을 직제순위에 맞게 순위조정

3. 주 요 내 용

- 가. 제명을 "평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서 "평창군사무위임
조례"로 개정

나. 별표중 신설되는 내용(개정안)

- 9.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 17.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및 과태료 부과 징수
- 20. 농지법시행령 제41조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 21. 농지법 제56조제1항 보고 및 검사등
- 34. 급수공사 위탁시행시 관리 및 책임
- 35. 급수중지 및 폐전
- 36. 건축신고사무처리

다. 별표중 폐지되는 내용(현행)

- 6.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 11. 토지등급결정에 따른 열람 및 개별통지
- 13. 부동산과세표준액 조사사무
- 19. 농가·비농가 증명
- 22. 계량기판매업 등록
- 26. 자가용전기공작물 보안담당자 선·해임신고
- 28. 산림이외의지역에서 생산한 임산물의 극인타기 또는 생산 확인표 발급
- 37. 민방위집행 계획수립(교육훈련 제외)
- 38.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2,300㎡이하의 농지의 일시전용에 관한 권한
- 40.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의 식재·재배신고에 관한 권한
- 42. 군세의 부과징수사무(담배소비세 제외)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신장과 더불어 매년 자치사무가 증가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사무위임 및 전결 권한이 대폭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사무위임, 사무위탁, 사무전결에 따른 자치법규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자치단체별 법규명칭의 혼용 등 문제점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단위사무 전산화」와 「행정계층간 사무처리 실태 총람」 재발간시 문제점이 예상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 또한 '97. 9. 30까지 정비 완료토록 '97. 5. 23까지 정리지침을 시달 하였음에도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은 책임행정에 미흡한 단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자구 및 위임사무명 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평창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3. 17. 평창군수(복지과장)
- 나. 회부일자 : 1998. 3. 30
- 다. 상정일자 : 1998. 4. 8 제55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 안 이 유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평창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평창군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
(안제2조)
- 나. 평창군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평창군의 자문에 응함. (안제3조)
 -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
 -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 다.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음. (안제9조)
- 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안제10조)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 평창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되어 96년 6월 30일 시행시기를 두고 강원도로부터 사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토록 통보되었으나 2년여가 지난 지금 본 조례를 제정코자 의회에 제출된 것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의 결여에서 온 것이라 사료됨.
- 아울러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97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여일간 군민들에게 입법예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에도 1년여가 지나도록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조례의 제정안을 살펴보면 조례제명에 있어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서는 시군구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여 조례 제명을 "평창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제출하였으나 평창군자체가 지방조직을 나타내고 있는 관계로 "지방"자를 삭제한 "평창군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강원도에서는 조례제명을 "강원도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두고 있음.
- 아울러 본 조례를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은 "지방"자가 빠진 "평창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관한조례안"으로 되어 있음.
- 기타 각 조항의 자구 및 체계,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3. 17. 평창군수(복지과장)

나. 회부일자 : 1998. 3. 30.

다. 상정일자 : 1998. 4. 8. 제55회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 안 이 유

-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 일선현장에서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및 유해환경 정화 등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지도 활동을 위해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을 규정함(안제2조, 제3조)

나.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를 규정함(안제4조)

-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모 및 지원활동 등

- 다. 지도위원은 임무수행중 지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토록 규정 함.
- 라. 군수는 지도위원의 임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제7조)
- 마. 지도위원의 효율적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군·읍면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규정할 수 있음.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 일선현장에서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및 유해환경 정화 등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지도활동을 위해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또한 "평창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과 같이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95. 12. 29)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토록 ('96. 5. 4)지시 되었음에도 2년여가 지난 지금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너무 늦은감이 있다고 사료됨.
- 최근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탈선 및 범죄행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을 기반으로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지도활동으로 지역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타 각 조항의 자구 및 체계, 내용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3. 23. 평창군수(복지과장)
- 나. 회부일자 : 1998. 3. 30.
- 다. 상정일자 : 1997. 4. 8. 제55회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 안 이 유

- 평창군장례식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명문화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장례식장은 평창읍 종부리에 소재를 둠(안제2조)
- 나. 장례식장에는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제3조)
- 다. 장례식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하되 필요시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안제4조제1항)
- 라.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리직원을 둘 수 있음(안제5조)
- 마.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로 충당한다(안제6조)
- 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시설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얻어야 함.
(안제7조)
- 사. 사용신청을 한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안제9조)
- 아.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안제10조제2항)

4.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현재 평창읍 중부리에 건립되고 있는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조례안으로 총사업비 3억 원으로 금년 4월말일 준공 예정이며 준공이후 본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본 조례는 강원도내의 시군 가운데 평창군이 처음으로 장례식장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의 기준 책정안은 인근 의료원의 영안실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책정하였으며 적정가격인 것으로 사료됨.

강원도내 의료원 영안실 사용료

의료원 별	활용인원 (월평균)	사 용 료 (1일기준)					비 고
		합 계	식 당	분향소	안치료	염사료	
영월의료원	13	146,000	50,000	20,000	20,000	56,000	
원주의료원	40	240,000	60,000	40,000	40,000	100,000	
강릉의료원	40	174,000	60,000	22,000	22,000	70,000	
춘천의료원	75	195,000	65,000	40,000	30,000	60,000	
속초의료원	40	170,000	60,000	30,000	30,000	50,000	

- 또한 조문 내용중 제8조(사용승인의 취소등)의 제②항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3호는 "천재지변등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때로 되어 있어 이러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이유는 본 조례의 목적은 공익을 우선시 함에 있으므로 최대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해야 될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각 조항의 자구 및 체계,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검 토 보 고 서

1. 회 부 경 위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 3. 18. 평창군수(상공과장)

나. 회부일자 : 1998. 3. 30.

다. 상정일자 : 1998. 4. 8 제55회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 제 안 이 유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도심 주차난 해소 및 에너지 절약과
과소비 억제 등 국가경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3. 주 요 내 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기량
800CC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 경감.

4. 검 토 의 견

- 본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800CC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기타 자구 및 체계, 내용은 문제시 되는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되며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그러나 평창군 관내에는 공영유료주차장이 없어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차요금징수 관련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본 조례 또한 96. 6. 29 주차장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을 조속히 이행 하여야 하였으나 2년여가 지난 현재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것은 책임행정수행에 미흡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